

「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-48호)에 따라
귀 원의 3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**25. 4. 14. (월) ~ 6. 13. (금) 기한 내**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제출마감 2주 전에는 접속자 급증으로 시스템 대기가 길어질 수 있으니, 미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)

< 2025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>

- (대상기관) '25.2.28. 기준, 개설·운영 중인 모든 의료기관
- (보고항목) 1,251개 항목(가격공개항목 693개 포함) ... 고시 [별표1]
- (보고내역) '25년 3월 진료 분에 대한 비급여 항목의 코드 및 명칭 등 22개 사항 ... 고시 [별표2]
- 단, '21번 보건의료인, 22번 의료기기 등'은 공개항목 중 항목별 금액 및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
- (제출방법)

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정보마당 (medicare.nhis.or.kr) → 비급여보고시스템 접속



※ 전산청구프로그램 미사용 기관은 「비급여보고 보고서식 작성요령 및 예시」를 참조하여 정규서식에
맞게 보고자료 파일 생성

- (행정사항)
 -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의료기관의 경우 「의료법」 제92조(과태료)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 - 보고기간 내 공단이 지정한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규서식으로 보고한 기관에 한하여 소정의 행정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.

자세한 사항은 [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\(medicare.nhis.or.kr\)](http://medicare.nhis.or.kr) 및 [비급여보고시스템 공지사항](#)
'2025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관련 자료 게시'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2025. 3. 24.

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(직인 생략)

문의

- 고객센터 1577-1000 > 0번 > 7번
- 비급여관리실 033-736-2040

제출방법 동영상
(QR코드 활용)

